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'14년 3월 11일(화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서성민 사무관(044-203-4631)

중소·중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

-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윤상직)는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)」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힘

□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, 공포 후 시행될 예정(3월 중순 예정)

○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,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(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) 비중 50%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%이상으로,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%이상으로 완화하였음

<개정 前>		<개정 後>
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	⇒	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,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)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

□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, 향후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○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, 군산 등에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및 495명 고용이 예상되고, 추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

○ 또한, 동해,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·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

* '13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(7개)에서 입주문의를 상담한 112개 기업 중 수출요건 미달기업이 26개

<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>

('13.12월 기준)

구 분	마산	군산	대불	동해	율촌	울산	김제
지정일 (운영일)	'70 (1·2공구 '72 3공구 '06)	'00 ('05)	'02 ('08)	'05 ('10)	'05 ('10)	'08 (조성중)	'09 (조성중)
입주기업	102	28	32	10	6	10	1
입주율	100%	88.4%	96.3%	20.9%	33.3%	38.7%	4.5%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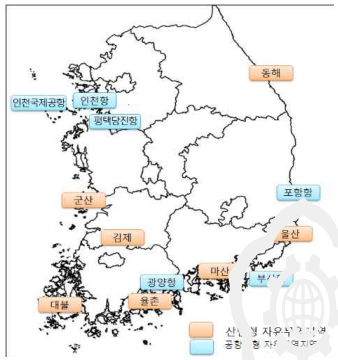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서성민 사무관(☎ 044-203-4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주요 인센티브

□ 자유무역지역 제도

○ **(정의)** 자유무역지역은 「관세법」,「대외무역법」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·물류·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, 무역의 진흥,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

○ **(지정 현황)** '14. 3월 현재 7개 산단형 FTZ, 6개 공·항만형 FTZ 총 3,178만㎡ 운영 중



* (산단형) 마산, 군산, 대불, 동해, 율촌, 울산, 김제

* (공항형) 인천국제공항

* (항만형) 부산항, 광양항, 인천항, 평택당진항, 포항항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주요 인센티브

○ **(관세유보)** 외국으로부터의 시설재, 원재료 및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 관세유보

○ **(부가가치세 영세율)**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, 국내에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○ **(저렴한 임대료)** 공장대지 및 표준공장 임대시 부지가액 1%수준

○ **(외투기업 조세감면)**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,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·종토세는 15년간 100%

○ **(One-stop Service)** 입주허가에서 공장건축허가, 외자도입, 통관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 활동 전반에 대해 일괄행정서비스 제공